

국토교통부 훈령 제1733호

「공공주택 업무처리침」(국토교통부 훈령 제1724호, 2024.3.25.)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.

2024년 3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침」 일부개정훈령(안)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최근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절차 지연으로 주민불편 발생 및 택지 개발사업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착수시기 등 절차를 마련 (「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(2024.1.10.)」)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시기 등 절차 신설(제22조제3항 및 제4항)

- 1)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지구를 지정·고시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, 현장조사 착수 전에 미리 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손실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함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부처협의 완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  
2) 행정규제 없음

##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

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를 지정·고시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. 다만, 120일 이내에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주택지구 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주택지구의 지정권자에게 손실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하며,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훈령 시행일에 주택지구가 지정·고시된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손실보상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       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2조(손실보상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를 지정·고시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. 다만, 120일 이내에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주택지구 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<u>④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주택지구의 지정권자에게 손실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다.</u></p>